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12
----------	-----

2000년 7월 일
문교보사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10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8회 정례회 제6차 문교보사
위원회
(2000년 7월 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신면호 국제협력담당관)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의 종류, 후보자추천 방식 및 수여대상자의 결정절차 등 명예시민증 수여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명예시민증의 종류를 특별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증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그 수여대상을 정함.(안 제2조)
-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 명예시민증 : 서울특별시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
 - 특별명예시민증 :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시장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후보자 추천, 수여대상자 결정 및 수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 (안 제3조 내지 제5조)
 - 후보자 추천 : 공공단체의 장,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인 이상의 시민이 연서로 후보자 추천
 - 수여대상자 결정 :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

-수여방법 : 명예시민증, 명예시민증서, 명예시민메달 또는 기념품 수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윤병국)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서울시를 방문하는 외빈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의 종류를 구분하여 정하고, 후보자 추천 및 수여대상자 결정방법을 종전의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을 생략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전문 개정하려는 것임.

- 현행 명예시민증 수여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야 할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수여하여야 할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동의절차는 시의성을 상실할 우려도 있으며, 또한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에 우리 위원회 위원 2명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장치가 있으므로 의회동의 절차를 생략한 것은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시의 적절한 제도운영을 위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2조와 같이 명예시민증의 종류를 서울시에 거주한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과 서울시를 방문하는 외빈이나 현지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특별명예시민증으로 구분한 것은, 현행 조례 제6조와 같이 서울시 방문 외국인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바, 명예시민증 종류를 두 종류로 구별하여 별도의 증서를 제작·수여하여야 할 특별한 실의가 없다고 보임. 따라서 서울시 방문 외빈이나 현지 외국인과 같이 일반적인 명예시민증 수여절차의 예외적인 경우로서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현행과 같이 같은 종류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안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명예시민증은 일반 명예시민증과 특별 명예시민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별명예시민증의 수여의 경우, 안 제3조와 같이 후보자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이나, 안 제4조의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 것은 서울시 방문 외빈이나 현지 외국인 중에서 서울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별도

의 추천이나 심사과정 없이 수여토록 한 안 제2조의 특별명예시민증의 수여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입법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됨.

- 안 제8조와 같이 명예시민증 수여심사위원회 관련 규정과 관련하여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정원, 위원장 선출, 위원 임명 또는 위촉 및 임기와 같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규정 등은 조례로 정하고 그 외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가.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안중 명예시민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명예시민증수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 현행과 같이 명예시민증은 서울특별시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에게 수여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
- 시장이 외빈 등에게 특별히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단서)
- 명예시민증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서울특별시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기타 서울시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

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13
----------	-----

2000년 7월 일
문교보사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12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8회 정례회 제6차 문교보사위원회 (2000년 7월 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송영식 기획관리실장)

가. 제안이유

- 초·중등교육법 개정(1999. 8. 31, 법률 제 6,007호)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00. 2. 28, 대통령령 제16,729호)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소규모 학교(학생수 60명 미만)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율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2항)
- 교원위원 선출시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학부모위원 간접 선출 근거를 정비함.(안 제3조제1항)
- 위원 보궐선출시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함.(안 제3조제3항)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8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2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12조제3항)